

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안연월일	2022. 6. .
제안자	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	
번호	

제안연월일 : 2022. 6. .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의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안건 등을 심사함에 있어서 자문이 필요한 때에 특정 안건의 의안처리 또는 의회운영을 위하여 전문가를 자문인으로 위촉하여 자문에 활용·운영하여 왔으나,
- 나.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전문가 자문인 제도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자문대상업무의 명료화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위촉기간의 연임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다. 별지 서식의 구체화 등(안 별지 제1호서식, 별지 제2호서식)
- 라. 올바른 띄어쓰기 반영 등

3. 조례안 : 붙임

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의회에서 위촉한 구미시의회전문가자문인”을 “전문가 자문인”으로, “의 활용에 관하여”를 “을 활용하기 위하여”로, “규정 함”을 “규정함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있어서 그 내용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고도의”를 “있어서”로, “조력이나 자문이 필요한 때에는 특정안건의 의안처리 또는 의회운영을 위하여 전문가를 자문인으로 위촉하여 자문에 활용”을 “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인을 위촉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항 제6호를 제3호로 하며, 같은 호(종전의 제6호) 중 “특수한 사안”을 “사안”으로 한다.

2. 입법활동, 의안심사, 의회운영 및 기타 의정활동에 관한 사안

제3조제1항 중 “전문가를 자문인으로”를 “자문인을”로, “사람중”을 “사람중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한다”를 “하되, 연임할 수 있다”로 하며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위원장은 위촉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분야에 전문적지식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”를 “분야의 전문가”로 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기간내”를 “기간 내”로 한다.

제6조 중 “[별지제2호서식]”을 “[별지 제2호서식]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범위안”을 “범위 안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수당”을 “1년 단위로 위촉하는 자문인의 수당”으로 한다.

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있을때에는 위촉기간중이라도”를 “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위촉기간내”를 “위촉기간 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문의”를 “자문의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전문가 자문인 위촉 요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	
전문가	성명	생년월일	
	직업	전화번호	
	주소		
관련안건			
자문사항			
위촉기간			
위촉사유 및 활용사항			

「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본 위원회의 의결로 위와 같이
전문가 자문인 위촉을 요청합니다.

년 월 일

구미시의회 ○○○ 위원회

(인)

구미시의회의장 귀하

- 첨부서류 1.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 사본
2. 자격증 사본
 3. 이력서
 4. 기타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자문의뢰 및 처리대장

연 번	전문가 자문인	자문일	회시일	자문내용	회시내용	결 재		
						담당자	담 당	전문위원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구미시의 회(이하 “의회“ 라 한다)의 안전 심사 등과 관련하여 <u>의회에서 위촉한 구미시의회전문가자문인</u> (이하 “자문인“ 이라 한다)의 <u>활용에 관하여</u>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전문가 자문인</u> ----- -----을 <u>활용하기 위하여</u> ----- <u>규정함</u> -----.
제2조(자문대상업무와 분야) ①의 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안전 등을 심사함에 <u>있어서 그 내용</u> 의 <u>특수성으로 인하여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</u> (이하 “전문가”라 한다)의 <u>조력이나 자문이 필요한 때에는 특정안전의 의안처리 또는 의회운영을 위하여</u> 전문가를 <u>자문인으로 위촉하여 자문에 활용</u> 할 수 있다.	제2조(자문대상업무와 분야) ① - ----- ----- <u>있어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 <u>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인</u> <u>을 위촉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②제1항의 자문대상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②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건설기술(토목,건축,도시계획)</u> 과 관련된 사안	2. <u>입법활동, 의안심사, 의회운영 및 기타 의정활동에 관한 사안</u>

3. 정보통신 및 전산화와 관련된 사안

4. 세무 및 회계와 관련된 사안

5. 보건·환경과 관련된 사안

6. 기타 고도의 지식·기술·경험을 필요로 하는 특수한 사안

제3조(위촉절차 및 위촉기간) ①
위원회 또는 의회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가를 자문인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 또는 의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중에서 선정하여 [별지 제1호서식]에 따라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③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.
다만,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회에 한하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.

<신설>

<삭제>

<삭제>

<삭제>

3. -----
----- 사안

제3조(위촉절차 및 위촉기간) ①

----- 자문인을 -----

----- 사람 중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하되,
연임할 수 있다. <단서 삭제>

④ 위원장은 위촉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4조(전문가의 자격기준) 의회가
 활용할 전문가는 당해 안전과
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지식 또는
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
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기준
 에 상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.

1. ~ 6. (생략)

제5조(자문인의 직무) ①·② (생략)

③자문인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
 가 안전심사에 대한 검토보고서
 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내에 제
 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자문의뢰 및 처리대장 비
 치) 의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
 하여 자문 등을 의뢰한 사항에
 대해서는 [별지 제2호서식]에 의
 한 자문의뢰 및 처리대장을 비
 치하고 기록·정정하여야 한다.

제7조(수당과 여비지급) ①자문인
 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
 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
 며, 여비는 회의에 참석하여 자
 문에 응할 경우 지급한다. 다만,
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

제4조(전문가의 자격기준) -----

----- 분야의 전문가-----

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자문인의 직무) ①·② (현
 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기간 내-----

-----.

제6조(자문의뢰 및 처리대장 비
 치) -----

-----[별지 제2호서식]-----

-----.

제7조(수당과 여비지급) ① -----

----- 범위 안-----

-----.

② 1년 단위로 위촉하는 자문인
 의 수당-----

-----.

그 다음날에 지급한다. 제8조(자문인 위촉의 해지) 위원장은 위촉된 자문인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<u>위촉기간중이라도</u> 의장에게 위촉의 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. 1. (생략) 2. 신체·정신상 이상으로 <u>위촉기간내</u>에 자문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. <u>문의</u>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4. (생략)	-----. 제8조(자문인 위촉의 해지) ----- ----- ----- <u>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</u>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<u>위촉기간 내</u>----- ----- 3. <u>자문의</u> ----- 4. (현행과 같음)
---	---